

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

의안 번호	32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0. 11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가.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3조, 제15조, 제19조 규정에 근거 우리지역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발전을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평창문화원의 지원·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
(안 제1조)

나. 평창문화원, 사업보조금, 운영보조금 정의 (안 제2조)

- 평창문화원 : 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강원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
- 사업보조금 :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
- 운영보조금 :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

다. 군수는 지방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
(안 제3조)

라. 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, 수행할 책무를 가짐
(안 제4조)

마.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함
(안 제6조)

바. 사업보조금의 용도 (안 제7조)

- 지역고유문화의 개발·보급·보존·전승 및 선양
- 향토사의 발굴·조사·연구 및 사료의 수집·보존

- 지역문화행사의 개최
-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·보존 및 보급
-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
-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
-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
-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
-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

사. 운영보조금의 용도 (안 제8조)

- 문화원 직원에 대한 인건비
- 문화원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임차비
-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

아. 군수는 보조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 및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음 (안 제9조)

자. 문화원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 (안 제10조)

차. 매년 예산에 문화원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및 기금의 출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함 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관계부처승인 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 : 2010. 8. 26. ~ 9. 15(20일간), 제출되 의견없음
- 마.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평창문화원의 지원·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평창문화원”(이하“문화원”이라 한다)이란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4조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.
2. “사업보조금”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.
3. “운영보조금”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평창군수(이하“군수”라 한다)는 지방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4조(문화원장의 책무) 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.

제5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보조금의 지원범위)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.

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.

제7조(사업보조금의 용도)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.

1. 지역고유문화의 계발·보급·보존·전승 및 선양
2. 향토사의 발굴·조사·연구 및 사료의 수집·보존
3. 지역문화행사의 개최
4.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·보존 및 보급
5.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
6.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
7.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
8.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
9.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

제8조(운영보조금의 용도)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.

1. 문화원 직원에 대한 인건비
2. 문화원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임차비
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

제9조(사무의 검사·감독) 군수는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,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10조(기금의 조성) ① 군수는 문화원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운용관리, 결산 및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1조(예산의 반영) 군수는 매년 예산에 문화원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및 기금의 출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2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문화원진흥법

제3조 (지방문화원의 육성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·육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4조 (지방문화원의 설립)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.

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도·시·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.

④ 시·도지사(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)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⑤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"문화원" 또는 "문화원"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하며,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도·시·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(지명)을 표시하여야 한다.

⑥ 지방문화원은 시·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(원)을 둔다.

⑦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 (지방문화원의 사업)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(계발), 보급, 보존, 전승(전승) 및 선양(선양)
2. 향토사(향토사)의 발굴·조사·연구 및 사료(사료)의 수집·보존
3.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
4.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·보존 및 보급
5.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
6.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
7.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
8. 지역문화의 창달(창달)을 위한 사업
9.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

제15조 (경비의 보조 등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(무상)으로 대여할 수 있다.

제19조 (조례의 제정)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